

의안번호	제 173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7년 11월 1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년 월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부서별 업무기능 확대·조정 및 소방관서 신설 등 신규
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 : 2,649명 → 2,687명(증38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77명 → 1,496명(증19명)
 -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: 1,058명 → 1,077명(증19명)
- 직급별 정원조정 : 증38명(일반 증16,연구 증2,소방직19,기능 증1)
 - 일반직(16) : 5급 증4, 6급 증9, 7급 증3,
 - 연구직(2) : 연구사 증2
 - ※ 연구직 정원중 1명은 사업소(산림환경연구소) 한시정원
 - 소방직(19) : 소방경 증1, 소방위 증5, 소방장 증3,
소방교 증6, 소방사 증4
 - 기능직(1) : 8급 감1, 10급 증2
- 한시직급정원 조정 : 2명(3급1, 4급1)
 - 사업소 2명(3급1, 4급1) →본청 2명(생명산업본부)
 - ※생명산업추진단 폐지, 본청 기구 설치에 따른 조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참고자료 : 비용소요추계서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 중 “2,649명”을 “2,687명”으로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477명”을 “1,496명”으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1,058명”을 “1,077명”으로 한다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직급정원) 본청의 정원 4급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, 4급 1명은 2009년 12월 31일까지, 3급 1명·4급 1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[별표1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직 종 별	기 관 별	합 계	본 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 업 소
총정원		2,687	1,038	70	1,317	262
정무직(도지사)		1	1			
일반직	소계	1,101	857	44	68	132
	2-3급	1		1		
	3급	9	8		1	
	3-4급	1	1			
	4급	60	42	7	5	6
	5급	221	180	10	15	16
	6급	374	298	14	19	43
	7급	377	287	12	24	54
	8급	57	40		4	13
	9급	1	1			
별정직	소계	22	13	3	5	1
	1급	1	1			
	5급	4	3	1		
	6급	11	4	1	5	1
	7급	3	3			
	8급	2	1	1		
	9급	1	1			
연구직	소계	142	2		110	30
	연구관	21			18	3
	연구사	121	2		92	27
지도직	소계	25			25	
	지도관	6			6	
	지도사	19			19	
소방직	소계	1,077	69		1,008	
	소방정	10	2		8	
	소방령	29	10		19	
	소방경	59	5		54	
	소방위	73	10		63	
	소방장	148	12		136	
	소방교	333	26		307	
	소방사	425	4		421	
교 원	소계	44			44	
	학장	1			1	
	교수·부교수· 조교수전임강사	32			32	
	조교	11			11	
기능직	소계	275	96	23	57	99
	6급	11	8	1	1	1
	7급	30	10	4	4	12
	8급	51	16	1	4	30
	9급	87	24	7	30	26
	10급	96	38	10	18	30

[별표 2]

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	정 원		존속기한	비 고
	계	내 역		
합 계	31	일반직 : 4급1, 5급6, 6급9, 7급7, 8급6 기능직 : 10급1 연구직 : 연구사1		
본 청	4	일반직 : 5급2, 6급1, 7급1	2008. 6. 30.	혁신지원 및 고객만족업무
	2	일반직 : 6급1, 7급1	2007. 12. 31.	사업별예산업무
	4	일반직 : 5급1, 6급2, 7급1	2008. 12. 31	역사규명업무
	1	일반직 : 6급1	2008. 12. 31.	과거사 업무
	3	일반직 : 7급1, 8급1 기능직 : 10급1	2008. 12. 31.	복식부기업무
	1	일반직 : 7급1	2008. 12. 31.	동학관련업무
	15	일반직 : 4급1, 5급3, 6급4, 7급2, 8급5	2008. 10. 30.	혁신·기업도시관련 업무
사 업 소	1	연구직 : 연구사1	2008. 12. 31.	소나무재선충 검사 업무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생략)	제1조(현행과 같음)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649명</u> 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	제2조(정원의 총수)----- -----2,687명----- -----
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477명</u>	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496명</u>
2.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<u>1,058명</u>	2.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: <u>1,077명</u>
3.~4.(생략)	3.~4.(현행과 같음)
제3조~제5조(생략)	제3조~제5조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 발 첩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~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19조(한시정원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 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

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.

④ <삭제>

⑤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.

⑥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⑦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

제21조(정원의 규정)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~⑤(생략)

비 용 소 요 추 계 서

1.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

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

○ 정원의 총수 : 2,649명 ⇒ 2,687(증38명)

- 일반직(+16) : 5급 +4, 6급 +9, 7급 +3
- 연구직(+2) : 연구사 +2
- 소방직(+19) : 소방경+1, 소방위+5, 소방장 +3, 소방교+6, 소방사+4
- 기능직(+1) : 8급△1, 10급+2

3. 비용소요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 출 근 거
총 계	1,528,599	
○ 인건비	1,251,468	
- 기본급	680,611	※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○ 일반직 - 5급(4명) : 18호봉 기준 - 6급(9명) : 15호봉 기준 - 7급(3명) : 15호봉 기준 ○ 연구직 - 연구사(2명) : 16호봉 기준 ○ 소방직 - 소방경(1명) : 18호봉 기준 - 소방위(5명) : 17호봉 기준 - 소방장(3명) : 15호봉 기준 - 소방교(6명) : 12호봉 기준 - 소방사(4명) : 10호봉 기준 ○ 기능직 - 8급(1명) : 12호봉 - 10급(2명) : 9급 10호봉 기준
- 수 당	250,846	
- 정액급식비	48,360	
- 교통보조비	47,760	
- 명절휴가비	69,412	
- 가계지원비	115,919	
- 연가보상비	38,560	
- 기타직보수		
- 일용인부임		
○ 물건비	101,580	
- 기관운영업무추진비		
- 부서운영업무추진비		
- 정원가산업무추진비		
- 직책급업무추진비		
- 직급보조비	54,420	
- 특정업무수행활동비	47,160	
○ 이전경비	175,551	
- 성과상여금	23,135	
- 연금부담금	122,249	
- 국민건강보험금	30,167	
- 연금지급금	-	